

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(폐지)

제정	2004.	1.	15	조례 제 492호
개정	2005.	10.	5	조례 제 621호
	2006.	10.	13	조례 제 825호
	2006.	12.	29	조례 제 856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7.	7.	1	조례 제 88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9.	4.	24	조례 제 994호
	2010.	11.	12	조례 제1108호
	2010.	12.	17	조례 제111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 개정	2013.	3.	6	조례 제127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폐지	2015.	1.	9	조례 제1421호(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정	1988.	5.	9	조례 제1073호
개정	1996.	3.	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2005.	10.	5	조례 제 665호
일부 개정	2014.	8.	8	조례 제1379호
전부 개정	2015.	1.	9	조례 제1421호(제명 개정)

분문생략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생략